# 교내연구비관리규정

 2006. 12. 19 제정
 2007. 3. 12 개정

 2009. 3. 9 개정
 2010. 3. 1 개정

 2013. 2. 20 개정
 2013. 9. 4 개정

 2013. 11. 27 개정
 2015. 10. 21 개정

 2016. 11. 9 개정
 2017. 12. 13 개정

 2020. 3. 25 개정
 2022. 3. 25 개정

 2022. 4. 22 개정
 2023. 2. 20 개정

 2023. 8. 24 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의 교비에서 전임교원 (이하 "교원"이라 한다)에게 지원되는 교내연구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연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교내연구비 지원분야) ① 교내연구비는 균형 있는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지원하되,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과제에 한한다.
  - ② 교내연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전임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.<신설 2013.11.27., 개정 2020.3.25., 2022.4.22.>
    - 1. 일반연구비 :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비<신설 2022.4.22.>
    - 2. 신진교원연구비 : '신임교원임용규정' 제3조에서 정하는 계약기간 2년 이내의 전임교원에게 국가 및 기타 R&D 사업 선정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비 <신설 2022.4.22.>
- 제3조(교내연구비) ① 교내연구비(이하 "연구비"라 한다) 중 일반연구비는 교원이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연구비를 말하며, 연구비 지원은 교원의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, 전시, 저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.<개정 2022.4.22.>
  - ② 신진교원연구비의 신청기준, 지원범위, 결과물 제출 및 지급중지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22.4.22.>
- 제4조(연구기간) 연구비의 연구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.<개정 2013.11.27., 2016.11.9>
- 제4조의2(신청자격) 연구비의 신청자격은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.<개정 2016.11.9, 2020.3.25, 2022.3.25., 2023.2.20.>

- 제5조(공동연구) ① 공동연구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본 대학교 교원과의 공동연구
  - 2. 외부 1인과의 공동연구
  - 3. 본 대학교 대학(원)생 및 졸업생(졸업 후 2년까지)과의 공동연구<개정 2016.11.9>
  - ② 공동연구는 교내연구비를 신청한 본 대학교 교원이 연구책임자이어야 한 다.<2010.3.1., 2016.11.9.>
  - ③ 공동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주저자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이어야 한다.<신설 2016.11.9>
- 제6조(연구비지원 신청방법)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는 교원은 신청 만료일까지 종합정 보시스템(교내연구→신청관리→교내과제신청)상에서 입력(저장)하고, 제출서류를 산학연구과에 제출한다.<2013.9.4., 2016.11.9>
- 제7조(제출서류) 연구비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16.11.9>
  - 1. 연구비 지원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  - 2. 연구계획서 1부
  - 3. <삭제 2016.11.9>
  - 4. 연구비 실행예산서 1부
- 제8조(연구비 지원 신청 제외자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비 지원을 신 청할 수 없다.<개정 2016.11.9, 2023.8.24.>
  - 1. 연구비를 지급받고, 연구결과 제출 마감일까지 연구결과물 또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교내연구최종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교원<개정 2016.11.9>
  - 2. 연구비 지원 신청 시 파견, 휴직 중인 교원<개정 2016.11.9>
  - 3. 정부(지방자치단체 포함)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비 지원 신청자격이 제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교원(단,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자격 제한이 해제된 교원은 예외로 한다.) <개정 2010.3.1., 2015.10.21>
  - 4. 연구비 신청 당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
  - 5. 정부(지방자치단체 포함)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 결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<개 정 2015.10.21>
  - 6. <삭제 2015.10.21>
  - 7. 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 제6장제2절과 교원인사규정 제31조에 의거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원 <개정 2015.10.21., 2016.11.9.>
  - 8. 교수업적평가 대상자 중 평가기준에 미달된 교원<신설 2016.11.9>
  - 9. 책임시간이 미달된 교원으로 다음 년도까지 책임시간을 보충하지 못한 교원 <2016.11.9>
  - 10. <삭제 2023.8.24.>

- 11. 기타의 사유로 소정 연구기간 내에 연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교원 <개정 2016.11.9., 2022.3.25.>
- ② 일반연구비와 신진교원 연구비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.<신설 2023.8.24.>
- 제9조(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) ① 연구비 지원여부는 소속 대학장이 추천하여 연구 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며 관련 규정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6.11.9>
  - ② 연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문계열별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.<개정 2016.11.9>
  - ③ 위원회는 연구비 지원과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.
    - 1. 연구의 목적, 필요성
    - 2.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
    - 3. 연구결과의 공헌 및 기여도
    - 4. 연구비 사용계획의 합리성
- 제10조(연구비지급) ① 연구자는 연구기간 중 월 1회 영수증을 제출하고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
  - ② 연구기간 종료일까지의 미집행잔액은 교비로 귀속된다.(2009.3.9)
- 제11조(연구비의 사용) ①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.
  - ② 연구비는 연구비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(계산서) 또는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인정한다.<개정 2013.11.27.>
  - ③ <삭제 2013.2.20>
  - ④ 연구비는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,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비실행예산변경승인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전자결재 서식함에서 작성하고, 산학연구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목별 금액의 변경 또는 비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. (2013.9.4.)
- 제12조(연구계획의 변경) ①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.<개정 2016.11.9>
  - ② 연구과제(논문제목)명, 공동연구원 등 연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부득이 변경하여할 경우에는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 내지 제5호 서식)를 전자결재 서식함에서 작성하고, 산학연구과에 제출하여 산학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09.3.9, 2013.9.4., 2016.11.9., 2023.2.20.>
- 제13조(연구자의 의무) ①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게재, 출간 또는 개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11.9>
  - 1. 논문의 경우에는 국제저명학술지(SSCI, A&HCI, SCIE, SCOPUS), 국내저명학술 지(한국연구재단 등재지)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3.1., 2013.11.27., 2016.11.9, 2020.3.25>
  - 2. 저서의 경우에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여야 한다.
  - 3. 예능계 전시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주요 화랑(예술대에서 공인된 기관을 명시한 목록)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11.9>
  - ② 연구자는 연구결과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연구결과 제

출마감 기한 내에 교내연구 최종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11.9>

- 1. 국내저명학술지에 게재할 경우,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또는 개인전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11.9>
- 2.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연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<삭제 2016.11.9>
- ③ 연구자는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- " 본 연구는 ○○○○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."
- (영문: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Duksung Women's University Research Grants 연도 또는 과제번호)<개정 2016.11.9.>
-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에 소속을 반드시 덕성여자대학교로만 표기하여야 한다.<신설 2017.12.13.>
- 제14조(교원학술활동 지원) 우수논문, 저서, 전시, 학술대회 논문발표 등 교원학술활동 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.<개정 2023.8.24>

# [제목개정 2023.8.24.]

- 제15조(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며,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한다.
  - 1. 연구책임자의 신분변동(퇴직, 사망 등) 등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<개 정 2017.12.13.>
  - 2. 연구책임자가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의사가 없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.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보고를 한 경우
  - 5. 제13조제2항의 연구결과 제출 마감일까지 연구결과물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 서를 교내연구최종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<개정 2016.11.9>
  - 6. 동일과제로 2중의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
  - 7.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
  - 8. 연구결과물에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<개정 2017.12.13.>
- 제16조(세칙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선정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.

3. (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으로 "교내학술연구비관리 규정"은 폐지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11조 제3항 삭제)

## 부 칙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2.(적용례) 제2조 제2항, 제4조의 2는 2014년도 교내연구비 지원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6. 11. 9>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7. 12. 13>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20. 3. 25>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22. 3. 25>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22. 4. 22>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2.(적용례)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신임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다만, 2022학년도에 한하여 2020년 3월 1일 임용된 교원에게도 신청자격 을 부여한다.

# 부 칙<2023. 2. 20>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23. 8. 24>

1.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 [별지 제1호 서식] 연구비 지원 신청서-전자결재용 <개정 2016.11.9> 연구비 지원 신청서

교수	주임교수	교학부장	학 장

신청번호											
서 그 기 케 머	국문										
연구과제명	영문										
연구첵임자	소속				직명				성명		
연구기간	200	년	월 -	200	년 월		연구	문헌(	) 조사(	실험(	)
연구참여자	공동연구	원(	)명	연구	보조원(	)명	형태	단독(	) 공동(	기타(	)
연구비	원		입 계좌 <sup>1</sup>	금 번호					은행명		
	소 속		직	명	성 명		입금	계좌번호	2	은행대	경
고도서그이											
공동연구원											

위와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비를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덕성여자대학교총장귀하

붙임 1. 연구계획(요약)서 1부 2. 연구비 실행 예산서 1부

# [별지 제2호 서식] 연구비실행예산변경승인신청서-전자결재용 (2013.9.4., 2016.11.9)

등록번호	
등록일자	
결재일자	
접수일자	
공개구분	공개

신청부서		
승인부서		

# 연구비실행예산변경승인신청서

연구책임자	소속	직명	성명	
과제번호				
연구과제명				
연구기간				
지원기관				
연구비총액				

지출항목	당초예산	변경예산	증감액	증감사유
연구참여수당				
연구활동비				
회의비				
여비				
재료비				
기자재임차비				
정보활동 및 인쇄비				
공공요금등 제잡비				

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 예산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:

[별지 제3호 서식]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(논문제목변경)-전자결재용<개 정 2016.11.9>

#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(논문제목변경)

교수		담당	강	주약	]	과	장	처장		부총장		총장
연구책임자	소 속				직	명				성 명		
연 구 비 지원기관						구비 · 류			년드	Ē.	辺に	에 연구비
연구과제명 (변경전)												
변경사항					논	-문제-	목변:	 경				
	ui -i -i	국문										
버크네서	변경전	영문										
변경내역	버거충	국문										
	변경후	영문										
변경사유												

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20
 년
 월
 일

 연구책임자 :

# [별지 제4호 서식]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(공동연구원변경)-전자결재용 <개정 2016.11.9>

#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(공동연구원변경)

교수		담당	주	임	J	가장	처장		부총장		총장
연구책임자	소 속			직	명			충	명		
연 구 비 지원기관				연구 종			li L	크도		교내	연구비
연구과제명											
변경사항				공동	F연-	구원변	경				
ال اد الا	변경전 모든 공동연구원의 이름, 소속을 반드시 명기										기
변경내역	변경후	모든	공	동연구	/원으	기 이름	·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을	반드/	시 명	기
변경사유											

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연구책임자 :

# [별지 제5호 서식]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(기타)-전자결재용<개정 2016.11.9>

#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(기타)

교수		담당	주	임	과장	처칭	}	부총	충장	총장
연구책임자	소 속			직	명		ر خ	 ] 명		
연 구 비 지원기관				연구 종		년	도		亚山	배 연구비
연구과제명										
변경사항					기타					
버크네서	변경전									
변경내역	변경후									
변경사유										

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20
 년
 월
 일

 연구책임자 :

[별지 제6호 서식] 교내연구 최종 연구실적 보고서-전자결재용 <신설 2016.11.9>

# 교내연구 최종 연구실적 보고서

교수	학과장	교학 부장	학장	담당	주임	과장	처장	총장

업적등	록번호								
교내연구 :	과제번호								
논문명/단행년									
학술지명						집.=	권.호		
게재학술지/ 행사내용	발행일자/								
	행사일자								
	발행기관/	게재된							
	행사장소					페	이지		
ələl/	책임연구원			직명			성명		
저자/	공동연구원			직명			성명		
발표자	공동연구원			직명			성명		
	연구비총액	일금				(₹	₩		)
연구비	기수령액	일금				(₹	₩		)
	금회신청액	일금				(₹	₩		)

위와 같이 20 학년도 교내연구 최종연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.

연구책임자 :

덕성여자대학교 총 장 귀 하